



[2017.9.22.] [275 , 2017.9.22.,]
(가)

) 043 - 870 - 5515

[별표 1]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20조 관련)

1.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계량기의 종류별 기호	연도	승인년도 일련번호	-	승인변경 횟수
A		00	001	-	01

비고: 형식승인기관의 명칭에는 그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승인 변경횟수를 생략할 수 있다.

2. 계량기 종류별 기호

기호	계량기 종류	기호	계량기 종류
A	수동저울	K	주유기
B	지시저울	L	LPG미터
C	전자식저울	M	오일미터
D	분동	N	눈새김탱크
E		O	
F		P	
G	전력량계	Q	적산열량계
H	가스미터	R	
I	수도미터	S	
J	온수미터	T	요소수미터

3. 형식승인표시의 제거방법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하는 등 형식승인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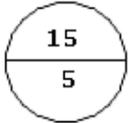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

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형상	종류	규격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가로 크기가 2 mm인 것 가로 크기가 3 mm인 것 가로 크기가 5 mm인 것 가로 크기가 7 mm인 것 가로 크기가 10 mm인 것

비고: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도 위와 같다. 이 경우 계량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검정"을 표시해야 한다.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을 표시한다.

형상	종류	규격
	타인(打印), 압인(壓印), 화인(火印)	지름이 5 mm인 원형 지름이 7 mm인 원형 지름이 10 mm인 원형 지름이 13 mm인 원형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 가. 저울·저울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눈금판이 있는 경우에는 눈금판[눈대 또는 눈금판이 없는 저울의 경우에는 최대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名板)]
- 나. 분동의 경우에는 윗면, 옆면 또는 바닥 부분
- 다.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및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면 판
- 라. 주유기, 요소수미터 및 LPG미터의 경우에는 부피조정장치
- 마. 눈새김탱크의 경우에는 통의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 바. 적산열량계의 경우에는 유량부, 연산부 및 지시부

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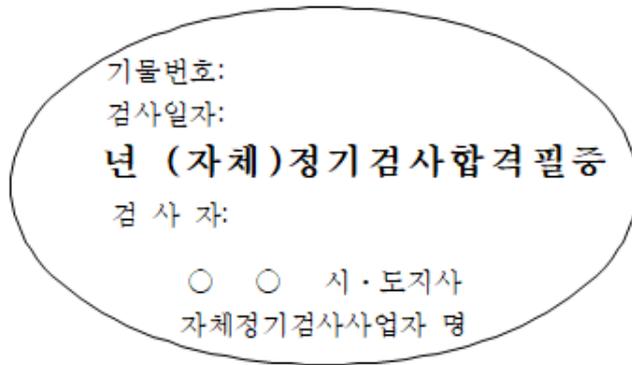
- 가. 접시저울 및 판저울
- 나. 전기식저울(요금이 표시되는 저울과 계량증명업소용 저울에 한정한다)
- 다. 가스미터
- 라. 수도미터
- 마. 온수미터
- 바. 오일미터
- 사. 주유기
- 아. 요소수미터

- 자. LPG미터
- 차. 적산열량계
- 카. 전력량계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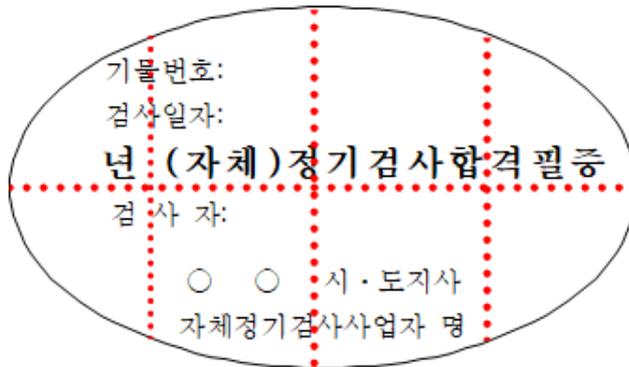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

1. 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야 한다.

3. 검사증인은 다음과 같이 미세한 구멍을 뚫어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검사증인의 제거방법

검사증인을 삭제하는 등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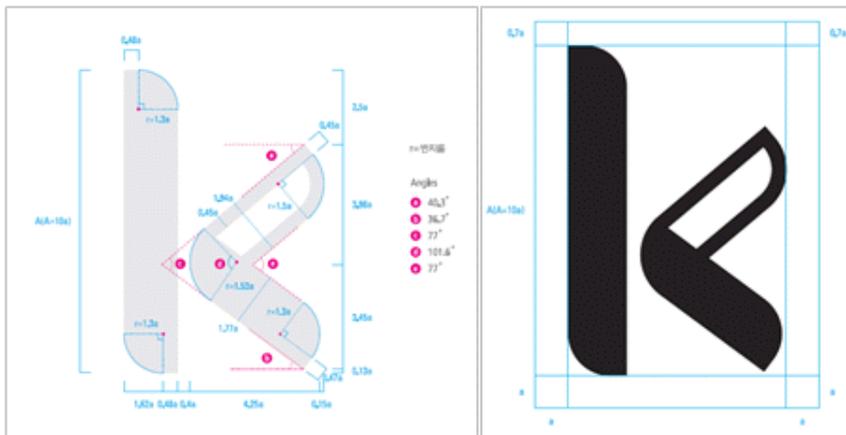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제40조 관련)

1. 자기적합성선언 표시



2.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는 정량표시의 앞쪽 또는 뒤쪽에 위치해야 하며 높이를 최소 3 mm 이상으로 한다.

3. 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의 작도법은 다음과 같다.



비고: 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의 하단에 "정량확인" 문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등록신청서
 [] 계량증명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수리·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시·도지사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시·도지사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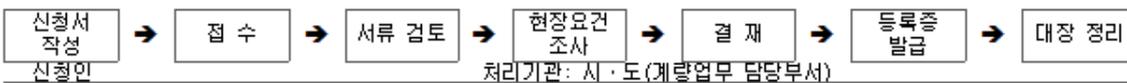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m²)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 **등록(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자체수리자
- [] 계량기 수입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	
	변경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 [] 자체수리자, [] 수입업)의 등록(지정·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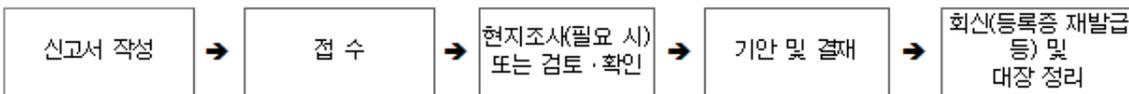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최초 지정 일자:

계량기 종류 및 수리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업체 주소:

제조업체명:

수입 계량기 종류:

최초 신고 일자: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2. 계량증명업 대장

계량증명업 대장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업체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 번호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비고
						종류	규격	수량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험기간 + 2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제조·수입 종류 및 범위	제조업 등록 일자(또는 수입업 신고 일자)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 종류	형식 명칭과 기호	규격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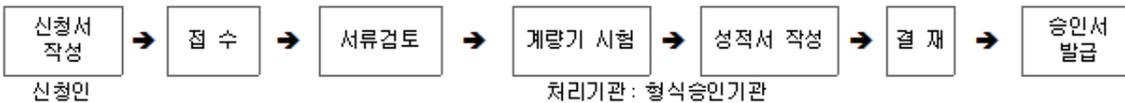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1부 2. 계량기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1부 5.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1부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지정 신청분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 · 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기술표준원장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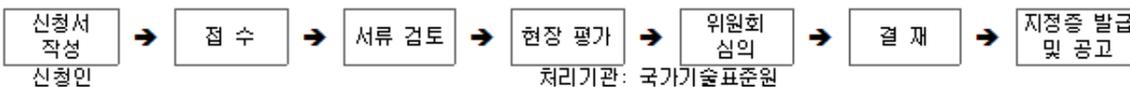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형식승인기관 지정증

기관명: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형식승인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형식승인기관
 []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적합성확인기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변경사항 및 사유	변경된 사항	등록사항 변경일 년 월 일	
	변경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4항, 제 26조제5항, 제 32조제3항, 제 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9조제3항, 제 26조제3항, 제 31조제2항, 제 39조제3항에 따라 ([] 형식승인기관, [] 검정기관, [] 자체검정사업자,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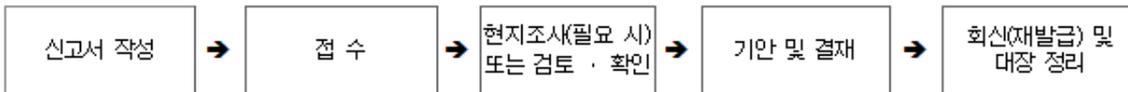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비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제3항, 제 26조제3항, 제 31조제2항, 제 39조제3항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m²)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형식승인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험기간 + 2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 종류	형식승인번호	규격
	변경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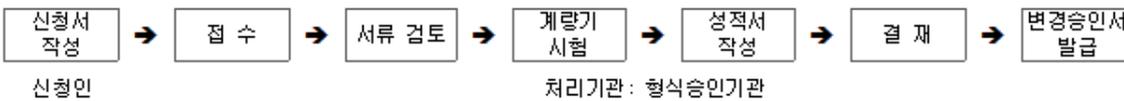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2. 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1부 3.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1부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계량기 검정
 [] 계량기 재검정 신청서
 []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검정 장소	
----------	--

검정 대상 계량기	계량기명	규격		검정 구분	수량	수수료		기물번호
		형식승인번호	규격			단가	금액	
	합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 검정, [] 재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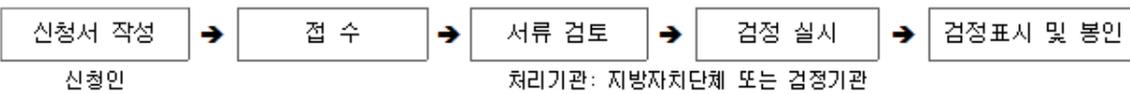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

기관명: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검정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m²)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발신:		인	
제목: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업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업종	계량기			비고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체정기검사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m²)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신청분야 및 규격	상품 종류		
	규격		

「계량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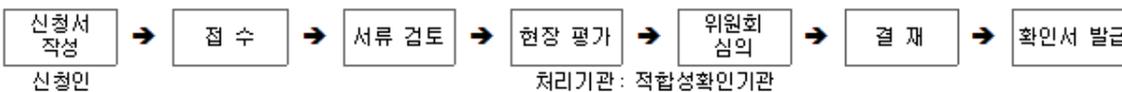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현황 1부 2. 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 1부 3. 검사설비현황 1부 4. 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1부 5. 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 1부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대상 상품	상품의 종류	규격	인증번호
	변경 사유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적합성확인기관

비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

기관명: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제 호

계량검사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뒷 면)

계량검사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계
량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제 호

소비자감시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뒷 면)

소비자감시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